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군서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4조【학교폭력전담기구】** 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기능】** 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③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제3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화기류, 총류(비비탄총 포함), 음란물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다.

②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한다.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 제③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9조【교우관계】** ①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군서초등학교 교무실(733-5607)
3. 학교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4.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90 -2125 )
5.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8.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⑥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결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며 학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등교 후 학교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 등

**제16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6.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7조【경조사 출결】** ①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②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제18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본교 시상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2. 3일 이상 결석의 경우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료확인서, 투약봉지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

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0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1조【학교정책참여】** 학생은 학교 운영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생활규정에 의견을 내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현장 체험학습

**제24조【목적】**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새 학교 문화 창조에 기여한다.

**제25조【방법】** 군서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에 따른다.

## 제4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일과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기타 전자기기의 제한: MP3 플레이어,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제5절 학생회 조직 운영 규정

**제28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생자치위원회 운영 및 활동 정비
- ⑤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2조【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3~6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 자치위원회 및 회의 운영

2. 각종 자치 규정의 협의 및 심의, 운영 보고의 승인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를 두지 않고 임시총회만 둔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1/2이상 또는 집행위원(각 학년 대표)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제4장 학생생활 지도

### 제1절 생활지도

**제33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학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바로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관계자에게 알린다.
- ⑥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⑦ 학교 등교 시간은 08: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제34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6조【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갈등이나 문제는 상담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충북가족보건복지협회 성폭력 신고상담 전화 263-2000
3. 청주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252-0968/9

**제3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에 피해를 입히거나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나 학교 측에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필요시 피해보상을 한다.

## 제2절 시상

**제38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제39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0조【시상】** 시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시상한다.

## 제5장 학생 징계

**제41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42조【징계의 심의】** 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43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4조【징계의 방법】**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두주의,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를 비롯한 교육별 등의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 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40조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성찰의 글을 쓴다.

1.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2.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3. 교재·교구 정비 등

④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1.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2.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나,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하도록 권장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1. 출석정지의 기간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록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이나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4. 출석정지 기간 중 학부모는 학생의 지도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45조【징계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제 40조의 징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① 학급규칙을 위반한 자
- ② 수업 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수업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자
- ③ 학교를 무단이탈하는 자
- ④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물건을 훔치는 자
- ⑤ 다른 학생을 폭행(성폭행), 협박, 갈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 ⑥ 무단으로 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 ⑦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 ⑧ 평가활동 중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 ⑨ 환각제, 본드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 ⑩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 ⑪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반항,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을 하여 교권을 모독한 자
- ⑫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⑬ 반복하여 음주, 흡연한 자
- ⑭ 기타 본 생활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어긴 자
- ⑮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46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결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47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8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되며 공휴일도 제외한다. 또한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9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장 개정방법(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50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 세부사항을 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

을 말한다.

**제5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감을 포함한 교사위원 3인, 학부모 위원 2인, 학생위원 2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 ② 재적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5조【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6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 제 1 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59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 2 절 생활지도의 방식

#### 제60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61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는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2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63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및 조치사항
제1호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해당 교과 수업 종료시까지)	.	교실 내 수업 참여
제2호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뒤, 10분 이내)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제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교무실 (해당 교과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 계를 요청하면 배움터 지킴이선생님과 함께 교무실로 이동함.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교감 학습지원)
제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1일 2회 이상)	교무실 (해당 학생의 학부모 교무실 도착 시까지)	학부모에게 사유 통지 후 가정 인계 조치함.	행동성찰문 단, 3회 이상 반복 시 Wee 센터 전문 상담 연계 지도함.
	돌봄 및 방과후 수업 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해당 학년 교실 (30분 이내)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 교사가 학생인계를 요청 하면 배움터지킴이선생 님과 함께 해당 학년 교실로 이동 후 담임교 사에게 인계함.	행동성찰문 단, 3회 이상 반복 시 가정 통보 및 퇴실 조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	교사가 학생인계를 요청 하면 배움터지킴이선생 님과 함께 보건실로 이 동함.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와 동일함.
기타	<p>※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 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 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 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p>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  
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  
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  
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에 해당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제1호	제6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li> </ul>
제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화기류, 총류, 레이저빔 기기, 약물류 등	3일 (단, 고가의 물건은 학부모에게 당일 직접 반환조치함)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함</li> </ul>
제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제4호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위화감 조성하는 고가의 물건, 음란물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4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65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

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68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